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8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3-86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6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지원 신규사업(2023.09.01.~) 실시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준 등이 상이하
여 제반사항을 일원화 하여 우리구 서비스 대상자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제4조) 및 신청(제7조)을 서울시 사업과 동일
나.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지역보건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3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전화 : 02-3396-5678, 팩스 : 02-3396-8902, 전자우편 : odi45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출산일”을 “신청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일”을 “신청일”로, “6개월(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로 한다.

제5조 단서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제1항 중 “6개월”을 “6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 대상) ① ----- -----. 1. ---- 신청일-----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 ----- -- 2.----- ----- 신청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재-----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정액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등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 60일 ----- ----- ----- ----- -----. ② (현행과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67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일자: 2023. 10. 20.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신세계백화점본점 앞 분수광장 주변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1(대표지번)
- 금연구역 지정 범위: 주변면적 4,900㎡

